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4. 9. 30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명형남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 myunghn@c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책무, 필요한 시책을 연구하여 제도(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데 있음

요 약

-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리적 성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량 0.1%이상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임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와 피해구제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2012.4.29.)과 「석면피해구제법」(2011.1.1.)을 제정하여 석면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함. 관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증대
- 석면 관련 법률 및 관리정책이 시행되면서 석면조사건축물의 대상 및 범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청소년·환자 등 취약계층 석면 노출, 석면의 비산먼지 피해, 효율적이지 못한 슬레이트 석면건축물 철거, 석면폐기물 불법처리, 석면물질 함유가능지역의 석면오염,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사업 허가, 석면관련 DB 통합 구축 및 석면관련 인프라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
- 석면 관련 법률과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외의 관리, 건축물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 불법 석면해체·제거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함

CONTENTS

< 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석면 관련 법률 검토
3. 석면 관리 실태 검토
4.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 석면(asbestos)은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임.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리적 성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건축물의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됨
- 석면은 미세한 입자구조로 인하여 호흡기로 장기간 흡입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asbestosis)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 및 석면 함량 0.1% 이상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

<표 1> 석면에 의한 질병의 종류

질병명	내용
폐암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악성중피종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석면폐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침착에 의한 섬유화이며, 흉막의 섬유화는 무관함
기타 부위의 암 - 식도, GI 등	

* 자료: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asbestos.me.go.kr/>)

-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광산 주변 토양오염,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변으로 석면 비산,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및 석면오염 탈크 문제제기,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
- 정부는 2010년 1월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하였고, 석면 사용 금지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시행함
 -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관리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2012.4.29.)을 통해 기존의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2011.1.1.)을 통해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까지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됨
-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년 9월28일 제정)
 -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년 11월1일 제정)
 -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4월8일 제정)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1월11일 제정) 등
-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예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
 -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 폐석면광산 38개소 중 25개소(66%)가 위치함에 따라 주변 토양 등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최근 청양군 강정리의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학교 등 일상 생활주변시설의

석면노출이 이슈가 되면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

- 본 연구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석면관리 실태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의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외의 관리, 석면함유 등의 실태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

석면 관련 법률 검토 ◀

가.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제5조~제7조)
 -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의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석면 등의 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제11조)
 -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
 - 석면함유 가능물질(천연광물질 포함)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이를 수입하거나 생산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제20조)
 -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 공개하고 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을 지정·고시
 -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해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리지역 관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 관리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석면비산방지계획 승인 및 석

면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건축물 석면의 관리(제21조~제2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함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공개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 이수
-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방안,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

●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 관리(제27조~제31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기준 초과시 작업 중지를 명령
-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감리인에게 석면비산 작업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작업중지 등의 권한을 부여

● 석면관리 인프라 구축(제32조~제49조)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나. 「석면피해구제법」 주요내용

- 구제 급여의 종류(제5조)
 -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석면피해 인정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제6조~제7조)
 - 구제급여를 받고자하는 자는 석면피해인정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운영(제8조)
 - 석면피해인정, 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특별유족인정 여부의 심의를 위해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둠
 -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인원으로 구성

- 구제 급여의 자격 및 절차(제9조~제23조)
 - 구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구제급여조정금, 구제 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등의 자격 및 절차
 -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조성 및 운영(제24조~제34조)
 -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석면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 관리 운영 등을 명시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추진이 가능한 항목

-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석면심포지엄, 환경부발표자료, 2011)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근로자, 사업장 중심의 법에서 국민, 주변지역 중심의 법으로 확대
 -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관리에 초점
 - 정부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및 추진이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 불법 석면해체·제거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석면 관리 인프라 구축 등

-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석면 관리에 대한 각 주체별 책무 및 추진 가능 사업을 <표 2>와 같이 정리함

<표 2> 석면 각 주체별 책무 및 추진가능 사업

항목	사업자 건축물소유자·점유자·관리자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중앙정부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 등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 등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조사결과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사용시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함 ▶위반한 경우 수거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	▶조사결과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사용시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함 ▶위반한 경우 수거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을 설치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결과 공고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하여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해 행정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공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재정적 지원을 요청 ▶관리지역 지정·해체 축소 요청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외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지역 지정·해체 축소
건축물 석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1명 이상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처리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석면해체·제거사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점검·관리 	
석면 관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석면 관리 실태 검토◀

- 석면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통합검색 kinds를 통해 ‘석면’, ‘관리’의 키워드로 최근 5년(2009.9.23.~2014.9.22.) 동안의 기사를 전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일간신문, TV방송뉴스 대상으로 검색함. ‘석면’의 키워드로는 7,980건이 검색되었고, ‘석면&관리’로는 2,268건이 검색되었음. 석면으로 인한 관리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석면&관리’로 검색된 2,268건에 대해 주제별,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분석 정리함
- 석면조사건축물의 대상 및 범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연면적이 500 m² 이상인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430 m² 이상), 둘째,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셋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 해당 규모 미만인 소형 건축물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일반건축물의 경우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있음
 - 건축물 연면적이 430 m²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석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 청소년·환자 등 취약계층 석면 노출
 - 2014년 김영주 의원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국의 19,717개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 중에서 88%인 17,265개 학교에 석면이 건축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충남의 경우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1,224개 학

교 중 96%인 1,172개 학교가 석면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조사 됨 (이는 전국에서 3위로 높은 비율)

● 석면 해체·철거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먼지 피해 발생

-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등 석면 해체·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작업자 및 공사 주변 주민 등에게 피해 발생
- 석면 해체·철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미흡

● 효율적이지 못한 슬레이트 석면건축물 철거 사업

- 슬레이트는 1970년대 건축지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 및 국민건강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슬레이트 제거 사업들이 여러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통일성이 없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과 슬레이트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석면 지붕재를 덮는 식의 시범사업이 진행
- 정부에서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기 위해 지붕 철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나, 지원 대상자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

● 석면폐기물 불법처리

- 석면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처리비용 등이 높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
- 전국적으로 47,480톤 정도가 방치되어 있거나 일반건축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환경부, 2008)

● 석면물질 함유가능지역의 석면오염

- 2011년 환경부에서 석면물질 함유가능지역 주변 정밀조사 결과 충남 당진 송악읍 월곡리, 제천리 수산면 전곡리 등 채석장 주변에서 석면오염토양이 검출되어 광해복구가 필요
- 충남도의 경우 2014년에 도내 채석장 79개소에 대한 영향조사 및 복구대

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

●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처리사업 허가

- 충남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내에 있는 폐기물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해 오면서 그 결과로 ‘중피종암’, ‘석면폐증’ 등의 질환을 앓고 사망한다고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강정리 주민들은 이 업체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허가 취소와 석면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충남도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2014.9)

● 석면 관련 DB 통합 구축 및 석면 관련 인프라 미흡

-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석면 관련 DB로 인해 정보가 분산
- 서울시의 경우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건축물 석면정보(석면지도, 조사결과 등),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서의 석면조사정보 및 해체·제거일정, 공기 중 석면모니터링 결과 등 석면에 대한 정보·제도를 주민들에게 공개
- 각 지자체별 석면관리 전담부서 미흡
- 주민과의 위해도 소통 및 참여 미흡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석면 관련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권한 및 책무,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을 검토하고, 석면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할 내용을 <표 3>과 같이 도출함

<표 3>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할 내용

구분	관련 규정	충청남도 조례(안)
석 면 안 전 관 리 법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 석면관리 목표, 현황(지도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등), 석면관리 및 지원대책, 예산 등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11조	▶ 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제20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계획 수립·시행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외의 관리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어린이집 우선 조사 실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조사결과 공개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및 위해성 조사 ▶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비용

	<p>석면조사 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p>	<p>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p>
	<p>제27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 사업장 주변의 배출허용기준 모니터링 의무화, 결과 공개
	<p>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5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 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석면 유해성, 제도 안내, 공공건축물 석면정보(석면지도, 조사결과 등), 도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모니터링 결과 등
<p>석 면 피 해 구 제 법</p>	<p>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비율 ▶ 비용 확보 및 예산 계상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도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관리 목표
2. 석면관리 현황
3. 석면관리 및 지원대책
4. 석면관리 및 지원대책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석면함유제품 등에 대한 사용 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제품 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 등의 사용 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관리) ① 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② 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외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적 특성, 개발사업 중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명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 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도지사는 도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도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하여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10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11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도지사는 제6조, 제7조,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단 조사결과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및 위해성 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도지사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제14조(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배출허용기준 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비산 정도의 측정방법, 지점, 시기 및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행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①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대기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2. 석면폐기물 매립 등 불법처리
3.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취급사업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석면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충청남도 석면관리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운영한다.

② 석면관리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석면 유해성 관련 정보
2. 석면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3. 공공건축물 석면정보(석면지도, 조사결과 등)
4. 도내에서 시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일정

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배출허용기준 모니터링 결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가 부담하여야 할 구제급여액의 분담 비율은 50:50 이다.

제21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도지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시·군 비부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부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영 제52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참고자료 ◆

- 윤하연 외, 201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한 폐석면 관리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이용곤, 2011, 경남정책 Brief-석면안전관리법 제정과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 인천시, 2013,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전국석면환경연합회·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11, Asbestos Symposium.
- 최민수, 2004, 조례안 발의 및 성안방법-자치공론 지방의회강좌(4).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최철호, 2009, 석면피해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경원법학 2(2), 245-266.
- 충청남도, 2014, 석면안전관리종합보고.
- 환경부, 2010, 석면세부추진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미디어 가온 (<http://www.kinds.or.kr/>)
-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